

의안번호	2216405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2. 9.
추 계 번호	26F05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
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법인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16억원, 2030년 16억원 등 2027~2030년까지 4년간 총 64억원(연평균 1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12조 제1항)	-16.0	-16.0	-16.0	-16.0	-64.0	-16.0
－ 취득세	-11.7	-11.7	-11.7	-11.7	-46.7	-11.7
－ 재산세	-4.3	-4.3	-4.3	-4.3	-17.3	-4.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제1항 (어업법인에 대한 감면)	- 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2조 제1항 (어업법인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어업법인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9.5억원에서 2022년 16.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7.5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 10.4억원으로 증가하여 감면실적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11.7억원
 - (재산세) 2020년 3.5억원에서 2023년 4.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5.8억원으로 전년대비 1.5억원 증가하여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평균 재산세 감면실적: 4.3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어업법인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적용대상: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율: 취득세 50%, 재산세 50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- (추계방법) 어업법인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

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0년 9.5억원에서 2022년 16.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7.5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 10.4억원으로 증가하여 감면실적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재산세) 2020년 3.5억원에서 2023년 4.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5.8억원으로 전년대비 1.5억원 증가하여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감면실적의 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2] 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감면실적	13.1	18.6	20.4	11.8	16.2	16.0
－ 취득세	9.5	14.9	16.1	7.5	10.4	11.7
－ 재산세	3.5	3.7	4.3	4.3	5.8	4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법인이 영어·유통·가공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16억원, 2030년 16억원 등 2027~2030년까지 4년간 총 64억원(연평균 1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어업법인의 영어·유통·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(안 제12조 제1항)	-16.0	-16.0	-16.0	-16.0	-64.0	-16.0
－ 취득세	-11.7	-11.7	-11.7	-11.7	-46.7	-11.7
－ 재산세	-4.3	-4.3	-4.3	-4.3	-17.3	-4.3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